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정안

<목 차>

1. 자율운항선박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작 성 자	이름	노소영
	담당부서 (과)	해운물류국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이시원		연락처	044-200-6201
	과장	송준석		이메일	in19035011@ma il.go.kr

2024. 07. 17.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자율운항선박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신설								
	2.규제조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제3조								
	3.위임법령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7.22~2024.08.3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자율운항선박의 국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시범운항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을 제정('24.1)하였으며, 시행('25.1)에 앞서 하위법령 제때마련 중 ○법률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여 실효성 확보								
	7.규제내용	○자율운항선박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기준 신설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자율운항선박 연구 관련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 등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대학, 연구소 등</td><td>대학 2개소, 공공기관 3개소 등</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대학, 연구소 등	대학 2개소, 공공기관 3개소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대학, 연구소 등	대학 2개소, 공공기관 3개소 등								
9.규제목표	자율운항선박 관련 국내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진출 기반 마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미해당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자율운항선박의 국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운항선박법 제정 및 시행('25.1)에 앞서 하위법령 제정 중
- 법률 시행에 따라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산업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예산 등 지원 가능
- 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최소한의 필요 조건을 법제화하여 제도 내실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단일안으로 해당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3. 규제목표

자율운항선박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 진출 기반 마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동규제의 목적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데 있어 지정 후보 기관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조건을 법제화하는 데 있으며
- 유사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최소한의 통상적인 범위에서 필요 내용을 명확화 한 것으로 규제로 인한 추가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수준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동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또는 차별성을 주는 사항 등이 없으므로 경쟁에 의한 영향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자율운항선박 관련한 기술 등은 아직 초기 단계로 교육이 가능한 대상 기관은 국가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중소기업 경영 등에는 영향이 적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전문기관 지정에 앞서 필요한 최소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등에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전문기관 지정에 앞서 필요한 최소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등에 미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전문기관 지정에 앞서 필요한 최소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등에 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앞서 필요한 최소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등에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전문기관 지정에 앞서 필요한 최소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등에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자율운항선박 관련 IMO로 부터 선박 설계 기준, 안전성, 책임 소재, 자율운항선박 승인 및 심사를 위한 요건과 절차 등 전반적인 규정을 담은 국제협약 MASS code(자율운항선박 코드)가 논의 중인 상황임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IMO MASS code	일치	

○ 타법사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유사입법례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동 규제와 동일 수준으로 명시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동 규제는 유사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지정 조건을 법제화한 것으로, 그 기준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규제로 인한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 또한,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 등은 아직 초입 단계로 교육이 가능한 대상 기관 자체가 국가 연구기관, 일부 대학 등으로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 기관도 동 규제 조건은 만족하고 있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목적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있어 필요한 요건을 명시한 것으로, 행정기관에서 집행할 추가 부담은 적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목적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있어 필요한 요건을 명시한 것으로, 행정기관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관계부서 및 기관, 업체 등이 참여한 협의, 간담회 등(1.18, 3.28)을 통해 법령안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한 이후 전문인력 양성 목표 설정, 달성 여부 등을 향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 예정

3. 종합결론

- 자율운항선박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재정지원 등이 가능하므로, 동 규제로 최소한의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동 제도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규제의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